

서울남부지방법원 2019. 6. 18 선고 2018가단205838 판결 [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3. C

4. D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애플

담당변호사 이종엽

피 고 E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정

담당변호사 김완중

변론 종결 2019. 5. 14.

판결 선고 2019. 6. 18.

주 문

1.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의 13/15지분에 관하여
서울남부지방법원 2018. 1. 18. 접수 제10886호로써 마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
이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망 F(이하 '망인'이라 한다)은 2018. 1. 25.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은 망인의 딸들이고 피고는
망인의 아들 G의 아들이다.

나.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3/15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7. 9. 22. 공증인가 법무법인 H
사무실에서 위 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7년 제731호로 "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원고들과
피고에게 각 5분의 1씩 유증한다"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(이하 '이 사건 공정증서'라 한다)를
작성하였다.

다. 망인은 2018. 1. 17.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유지분 13/15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을
체결하였고(이하 '이 사건 증여'라 한다) 이에 터 잡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. 1.18. 접수
제10886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3/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8. 1.17. 증여를 원인으로 한
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이전등기'라 한다)가 경료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,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, 변론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원고들의 주장

이 사건 증여 당시 망인은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
무효이고 원고들은 2017. 9. 22. 증여에 의하여 각 1/5 지분을 취득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을

행사하거나 예비적으로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여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망인 지분에 대한 공동상속인으로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.

예비적으로 이 사건 증여는 당시 망인이 정상적인 인지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서 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으로 착오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으로서 보존행위 차원에서 이 사건 증여를 취소하고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.

나. 판단

1)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바,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9. 1. 15. 선고 2008다58367 판결 등 참조). 한편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(대법원 2014. 3. 13. 선고 2009다53093,53109 판결 등 참조).

2) 이 사건 증여 당시 망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는지 살피건대, 갑 제2, 10, 12 내지 15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망인은 1922년생으로 96세에 해당하고 기본적인 일상생활이나 수단적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준 와상상태의 장애가 있었으며 인지기능에서도 주소나 나이, 생일 등을 기억하지 못하고 판단력이 떨어지는 인지력 저하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. 그러나 위 각 증거와 을 제2내지 4,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I의 증언, J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2018. 1. 19. 망인에 대한 장기요양인정 여부를 조사하고자 방문하였을 때 망인은 지시나 하루 일과를 이해할 수 있고 가족들을 알아볼 때도 있고 못 알아볼 때도 있어 인지기능은 제한적인 저하상태에 있었던 사실, 망인이 2018. 1. 20. K병원에 내원하였을 때에도 의식은 명료(alert)하였던 사실, 이 사건 증여 전날 망인은 휠체어를 타고 아들 G와 함께 J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인감변경신고 및 인감증명 발급,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였고 주민센터 직원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인감변경 의사를 확인받은 후 주민등록증

재발급신청서에 직접 서명하고 인감변경대장에 지문을 날인하였으며 인감증명 발급시에도 직접전자서명을 하였던 사실, 이 사건 증여 당시 법무사 I이 사무장과 함께 망인의 집을 찾아가서 망인에게 증여의사를 확인하고 확인서면을 작성하였으며 망인은 '본인은 위 부동산의무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합니다 F'이라고 서명한 사실, 그 무렵 망인은 떡국이나 죽을 먹었고 요양사와 의사소통을 하는데 지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증여 당시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의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정상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채 진실한 의사에 반하여 증여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증여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)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이 사건 증여는 망인이 정상적인 인지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으로 착오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용철

별지 목록

1동의 건물의 표시 : 서울 양천구 아파트

전유부분 건물의 표시

건물번호:

구조 : 철근콘크리트조

면적 : 66.60㎡

대지권의 표시

토지의 표시	1. 서울 양천구	대 100019.9㎡
	2. 서울 양천구	대 19936㎡
	3. 서울 양천구	대 24313.5㎡
	4. 서울 양천구	대 13895.2㎡
	5. 서울 양천구	대 21985.3㎡

대지권의 종류 : 1, 2, 3, 4, 5 소유권대지권

대지권의 비율 : 180149.9분의 63.30

--- 이상. --